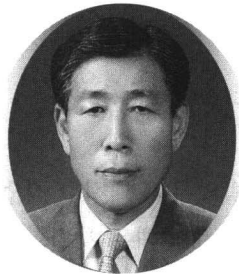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 남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

일전에 경기도 지역의 한 시에서 조성한 아파트형 공장단지를 둘러보았다. 해당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업단지 입주기업은 대부분 50인 이하이며 약 700여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고 총 근로자수는 1만여 명으로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15명 수준이다. 입주 기업의 조건은 제조업으로 유해·위험한 공정이 없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조건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도 가끔은 눈에 띄었다. 단지를 돌아보면서 입주기업 관계자에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을 이야기 하였더니 관심을 보였지만 개별업체의 반응은 선뜻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돌아오면서, 이러한 규모의 단지라면 계획 당시부터 공동의 보건관리자 역할이 가능한 보건관리실 정도(집단보건관리 시스템)는 두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도금사업장 같은 특정 업종만 입주한 형태나 지역적 특성이 있는 업종이 입주된 경우도 있다. 모두가 다 집단보건관리

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97년까지는 50인 미만 30인 이상의 유해사업장에도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었으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없어진 후 대안 마련은 되지 않았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근로자 5인 미만의 시장·상가·음식점 등이 있다. 점심때나 저녁때 식당에 가면 주방이나 홀에서 무거운 음식 그릇을 힘들게 다루는 근로자를 보게 된다.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근골격계질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될 때가 많다. 이들이 전문병원 같은 의료체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해당 질환이 깊어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나 지원을 해 주는 지역산업보건센터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 것은 2002년 1월부터이다. 벌써 3년이 경과되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집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동부가 내놓은 '09년까지의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안전격차해소 지원 차원에서 Clean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산재취약 근로자의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이다. 더욱이 Clean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 '01년도부터 운영방법을 Clean 사업으로 바꾸어 수행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은 많은 산업보건 전문기관들이 기피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이제 그 틀을 바꿀 때가 되었음에도 새로운 모델 설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06년도 예산안을 수립하게 된다. 그 이전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기술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시 짚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당위성이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93년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WHO와 ILO의 지원 하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사업'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심포지움에서 채택된 산업보건사업의 접근방식과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유해인자의 종류와 범위 등의 문제를 알아내고 이의 관리와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

시 (2)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있는 유관기관, 전문단체, 병원, 기업집단 등의 참여와 유기적 협조 (3) 산업보건의 중요성과 노·사 관계자의 참여 등을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산업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법제화 한다. (4) 산업보건 지원을 하는 분야별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5) 노·사 관계자와 감독기관 그리고 지역 산업보건센터가 협력하여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성 운영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 및 관련기관과 사업주가 부담한다. (6) 지역 산업보건센터는 해당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개발, 폭넓게 적용되도록 한다. 환언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서비스는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하고 잘 훈련된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등)이 있는 서비스 기관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여건을 살펴보면 100여개의 산업보건 기관이 있으므로 전문인력(기관)의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국고지원 사업의 범위(대상)를 확대시켜 나가면 커버될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보건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제도의 설정이다. 정부는 '08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 체계의 확립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기 바란다. ☺